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 원유 수집·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

1)	2)	3)
----	----	----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체류·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SF affected countries	[ ] 우제류(소·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 ] 가금류(닭·오리·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	--	---

[ ] 우제류·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poultry) market	[ ]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